

『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1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1995년경 조례 제정 당시 범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- 제정 당시 목적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며,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조례제정 당시(1995년)의 목적이, 당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전업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, 현재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어, 더 이상 조례의 실효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